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0. 12. 9.(수)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1. 회부경위

- 제출자 : 권영숙 의원 외 7인
- 제출일 : 2020. 11. 24.
- 회부일 : 2020. 11. 24. (의안번호 : 20-187)

2. 제출이유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아동의 양육에 대한 문제와 이로 인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요 용어 정의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 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 마. 아동학대 신고 및 정책의 심의 등 (안 제7조 ~ 안 제8조)
- 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11. 19. ~ 2020. 11. 23.
- 2) 관계법령 : 붙임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정 형성 및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인하여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간 “2019년도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보면, 2015년 19,214건, 2016년 29,674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으로 평균 10%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표 1)

또한 같은 자료 2017년도 아동학대보고서에 따르면 마포구에서 발생한 신고접수는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22건 등 총 124건입니다(표 2)

- 최근 우리구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 수를 보면 10월, 11월 2개월 동안 18건이 발생하여 아동학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표 3)

신고자 유형별로 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초·중·고 교직원이 19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7건 순이며,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부모가 26건, 아동본인이 21건, 이웃이나 친구가 12건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2014년 9월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사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사전적인 학대 상황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을, 안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심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포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동학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가 명문화되고 담당부서의 관내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방지를 위한 노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벌어지는 사건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토대로 총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 1]

연도별 피해아동 접수 건수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 80%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작년 대비 신고접수건수가 13.7% 증가하였고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92.7%가 아동학대의심사례였다.

〈표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연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특수신고		일반상담		특별상담 사례		계	전년 대비 증감률	비고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2015년	16,661	(86.7)	87	(0.5)	2,465	(12.8)	11	(0.1)	19,214	(100.0)	
2016년	25,878	(87.2)	189	(0.6)	3,604	(12.1)	3	(0.0)	29,674	(100.0)	54.4
2017년	30,923	(90.5)	292	(0.9)	2,951	(8.6)	3	(0.0)	34,169	(100.0)	15.1 국형과제 지정
2018년	33,532	(92.1)	420	(1.2)	2,464	(6.8)	1	(0.0)	36,417	(100.0)	6.6
2019년	38,380	(92.7)	449	(1.1)	2,560	(6.2)	0	(0.0)	41,389	(100.0)	13.7

※ 특별상담사례 건수는 제외함.



[표 2]

2017년도 서울시 자치구 피해아동 접수 건수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서울	중구	2	(0.1)	36	(0.1)	38	(0.1)
	종로구	2	(0.1)	56	(0.2)	58	(0.2)
	서대문구	7	(0.3)	143	(0.5)	150	(0.5)
	마포구	2	(0.1)	122	(0.4)	124	(0.4)
	은평구	6	(0.3)	306	(1.1)	312	(1.0)
	동대문구	23	(1.1)	133	(0.5)	156	(0.5)
	중랑구	19	(0.9)	159	(0.6)	178	(0.6)
	도봉구	12	(0.6)	172	(0.6)	184	(0.6)
	성동구	8	(0.4)	51	(0.2)	59	(0.2)
	강동구	3	(0.1)	81	(0.3)	84	(0.3)
	강남구	1	(0.0)	86	(0.3)	87	(0.3)
	성북구	12	(0.6)	159	(0.6)	171	(0.6)
	서초구	1	(0.0)	43	(0.1)	44	(0.1)
	송파구	1	(0.0)	85	(0.3)	86	(0.3)
	노원구	33	(1.6)	183	(0.6)	216	(0.7)
	용산구	3	(0.1)	91	(0.3)	94	(0.3)
	강북구	4	(0.2)	189	(0.7)	193	(0.6)
	광진구	34	(1.6)	173	(0.6)	207	(0.7)
	영등포구	8	(0.4)	86	(0.3)	94	(0.3)
	관악구	3	(0.1)	127	(0.4)	130	(0.4)
	구로구	19	(0.9)	86	(0.3)	105	(0.3)
	금천구	11	(0.5)	100	(0.3)	111	(0.4)
	동작구	1	(0.0)	47	(0.2)	48	(0.2)
	강서구	45	(2.1)	197	(0.7)	242	(0.8)
	양천구	14	(0.7)	213	(0.7)	227	(0.7)
	소계	274	(13.1)	3,124	(10.8)	3,398	(11.0)

[표 3]

우리구 아동학대 접수 건수

□ 2020.10.1. 이후 마포구 아동학대 통계(2020.11월말 기준)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 가해자의 100%는 친부모에 의한 학대, 100%가 가정 내에서

구 분	신고 접수건 (가구수)			아동수 (명)			비고
	합계	최초	재신고	합계	접수 아동수	인지신고 (상담원 추가)	
합계	18	16	2	27	23	4	
10월	11	9	2	20	16	4	
11월	7	7		7	7		조사중

* 재 신고 : 최초 신고 이후 다른 학대 내용으로 추가 신고

* 인지신고 : 신고 접수된 가구 조사결과 가족 내 신고 되지 않았으나 상담 및 조사과정 중 학대 판단된 아동 수

○ 신고접수 중 아동학대 판단 현황

-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중복학대 (단위 : 건)

구 분	신고수 (아동수)	학대 판단	조사중	일반 사례 (학대 제외)	비고
합계	18	11	5	2	
10월	11	9		2	
11월	7	2	5		

* 10월 신고 접수된 11건 중 9건(81%)이 아동학대 판단 건수임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